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영업허가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15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
영업장	명칭(상호)		
	주소	(전화번호:)	
	신청업종	[]동물장묘업 - 장례식장: 설치 / 미설치 - 동물화장시설: 설치 / 미설치 - 동물건조장시설: 설치 / 미설치 - 동물수분해장시설: 설치 / 미설치 - 봉안시설: 설치 / 미설치	[]동물생산업 []동물수입업 []동물판매업(일반, 알선·중개, 경매 알선·중개) *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

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 항목

생산동물의 종류	[]개, []고양이, []그 밖의 동물()	인력 현황(종사자 수)	명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

품종별 사육 마릿수	품종명	마릿수			[]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 *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1 제2호가목1)바)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√ 표시합니다.
		암컷	수컷	총합	
	*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				

맹견 사육 여부	[]예, []아니요	(참고) 맹견의 범위(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2조) 1.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, 2. 핏볼테리어(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)와 그 잡종의 개, 3.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4. 스테퍼드셔 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, 5.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
----------	--------------	---

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<p>첨부서류</p>	<p>1.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. 인력 현황 3. 사업계획서 4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.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(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	<p>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만원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p>1.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 2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</p>	

행정정보 공유이용 등 동의서

-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(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, 소재지 등)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, 동물수업업, 동물판매업, 동물장묘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“[]”란에 √ 표시를 하고, ()안의 영업의 세부 범위에 표시합니다.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, 영업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.
-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, 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시설, 동물수분해장시설, 봉안시설 중 설치·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.

처리절차

